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2180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618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21806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치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규엽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엄성진, 손인준

변론종결 2023. 5. 24.

판결선고 2023. 6. 21.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46,116,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6,116,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51분의 530지분 및 별지2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D에게, 1)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51분의 53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21. 1. 18. 접수 제35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2) 별지2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 18. 접수 제7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제1대출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90,000,000	2016. 3. 7.	2022. 2. 18.
제2대출	E대출	30,000,000	2020. 7. 17.	2021. 7. 15.

제3대출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50,000,000	2020. 10. 16.	2021. 10. 13.
제4대출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	20,000,000	2020. 11. 18.	2025. 11. 18.

나. D은 2020. 12. 28.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녀인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D은 2020. 12. 30. 피고 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1. 1. 18. 피고 C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 7. 17.자로 마쳐져 있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20. 7. 17. 접수 제330539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아니다)가 2021. 7. 28. 말소되었고, 다음 날인 2021. 7. 29. 주식회사 F의 채권최고액 29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기준의 이 사건 각 채권액 상당의 돈 및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갑 7,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19,000,000원인 사실(채권최고액은 286,800,000원), 2020. 12.경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D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D을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그 상태를 더 심화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D 사이에 ‘피고 B과 D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0. 12. 28.자 작성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B과 D은 2021년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와 D는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았고 이에 관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피고 B와 D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실제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출금 승계, 생활비 지급 등)이 준수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악의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존재 및 그 연체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한 것 외에는 D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을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및 D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실, 인천계양경찰서는 2023. 3. 27. 피고들 및 D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 불송치 결정서에는 ‘D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 B에 대하여 협의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진의로 양도하였고,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서 체납 면탈을 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려고 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사결과는 조세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등 조세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조세범 성립요건과 민사상 사해행위의 요건은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D 사이에 실제로 이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및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1) 이 사건 건물(피고 B)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이후 당초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에 의해야 한다.

변론종결일인 2023. 5. 24.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① 제1대출약정에 관하여는 원금 잔액 11,187,391원, 특수채권 편입전 연체이자 잔액 1,512,356원, 최종회수일자 2021. 12. 28. 후 2022. 2. 10.까지 발생연체이자 92,515원, 원금 11,187,391원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6.8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984,024원을 더한 13,776,286원(11,187,391원+1,512,356원+92,515원+984,024원)이고, ② 제2대출약정에 관하여는 원금 잔액 28,500,000원, 특수채권 편입전 연체이자 잔액 730,575원, 최종회수일자 2021. 12. 28. 후 2022. 2. 10.까지 발생연체이자 225,032원, 원금 28,500,000원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6.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393,531원을 더한 31,849,138원(28,500,000원+730,575원+225,032원+2,393,531원)이 되고, ③ 제3대출약정에 관하여는 특수채권 편입전 연체이자 잔액 238,682원이고, ④ 제4대출약정에 관하여는 원금 잔액 231,247원, 특수채권 편입전 연체이자 잔액 2,057원, 최종회수일자 2021. 12. 28. 후 2022. 2. 10.까지 발생연체이자 1,616원, 원금 231,247원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5.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7,197원을 더한 252,117원(231,247원 + 2,057원+1,616원 +17,197원)이 된다. 결국 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46,116,223원(13,776,286원+31,849,138원+238,682원+252,117원)이 된다.

한편 갑 7,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3.경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5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19,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차액은

131,000,000원(350,000,000원-219,000,000원)으로서 위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한다.

결국 D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은 46,116,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46,116,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피고 C)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D에게 원물반환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종건

[별지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G에 있는 H아파트 1호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1층 598.92㎡

2층 588㎡

3층 588㎡

4층 588㎡

5층 588㎡

6층 588㎡

7층 588㎡

8층 588㎡

9층 588㎡

10층 588㎡

11층 588㎡

12층 588㎡

13층 588㎡

14층 588㎡

15층 588㎡

16층 588㎡

17층 588㎡

18층 588㎡

지층 584.2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북구 G 대 30207.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1992년 12월 2일 제2층 1호 철근콘크리트조 84.7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207.8분의 35.80

[별지2]

1. 충청북도 단양군 K 임야 1851㎡
2. 충청남도 부여군 L 대 463㎡
3. 충청남도 부여군 M 대 4㎡
4. 충청남도 부여군 N 대 53㎡ [끝]

